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6. 23.(목)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재홍 부위원장 (1인)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6월 20일에 있었던 제3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6-35-13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재)극동방송과 (재)국악방송의 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경우 ‘15년 2월 방통위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5년 12월 24일 미래부에서 ‘적합하다’는 기술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16년 4월 29일 극동방송에서 방통위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악방송의 경우는 ‘16년 1월 29일 방통위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월 19일 미래부로부터 ‘적합하다’는 기술심사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국악방송에서는 방통위에 보정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방송사업자별 신규허가 신청 내용은 극동방송의 경우는 제주도 일원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국 허가를 신청하였고, 국악방송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일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국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심사의 기본방향은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신규허가 심사임을 고려하여 방송편성 및 지역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 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촉 기준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입니다. 결격사유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 제시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독교 복음 전파와 지역 전통문화의 확대를 위해 지역 FM 라디오 방송국이 개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여부 결정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신청인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신규 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청취자 의견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거쳐서 8월 중에 심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의결 및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렇게 새롭게 신규허가가 되면 기존의 다른 FM방송에 혹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FM방송에서 우려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가장 큰 것이 혼신 부분입니다. 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적합 판정을 했기 때문에 혼신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청취자들에게 의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온다면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청취자 의견청취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종교방송 또는 국악방송 같은 이런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하려는 또는 기존에 있었던 방송이 설립돼서는 안 된다는 탄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중요한 것은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가를 내놓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생존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 재정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영업을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극동방송과 국악방송은 광고가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광고가 없다면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극동방송은 주로 현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작비 자체도 대부분 종교 내용으로 때문에 지역에 있는 종교인들께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방송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 보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만약 이번에 허가가 되면, 이런 유사한 목적의 방송을 설립하려는 단체가 있다면 하나의 기준이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저희에게 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업자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더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CBS라든지 불교방송, 광주방송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혼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부 기술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기술심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술심사의 적합성 판정이 나와만 저희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아직 심사진행 대상은 아

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불교방송이나 다른 CBS 기독교방송이 새롭게 또 신규허가를 계속 내고 싶어 할 텐데 거기는 주로 광고영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CBS 같은 경우는 음악전문FM을 했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불교방송도 일부 광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방송 같은 경우 SBS 프로그램을 수중 계 하기 때문에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방송광고시장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우리가 허가해 주면서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왜 저쪽은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줬냐?'라는 식의 불만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광고영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허가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광고영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나머지 신규 신청이 들어올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잘 마련해서 예를 들어 광고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광고영업을 전제로 해서 허가해 줄 경우 방송광고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또 피해가 생기는 기존 방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허가할 때 심사에 많이 반영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편성내용은 일종의 특수목적적인 것 같습니다. 종교방송 내지는 국악방송인데 여기에 우리가 허가해 주는 편성내용이 미리 편성표 형태로 우리에게 신청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직은 못 보고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신청서가 이미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서 방송 허가의 특수목적에 벗어나 유사 뉴스 같은 것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방송 같은 경우도 당초 설립목적과는 벗어나게 제법 뉴스 형태를 갖춘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종교목적이기 때문에 전문편성비율 80%를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보통 대표자 의견청취를 할 때 보도 부분들은 대표자에게 다시 한 번 확약을 받고 사후에도 편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한다는 확약도 받고 허가조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컨대 실제로 방송허가가 되어서 운영할 때 당초 편성표에 많이 벗어나는, 설립목적 이외 다른 유사 뉴스를 할 경우에 제재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기본적으로 편성내용을 보긴 하지만 편성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가목적 이외의 보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으로 부여됐기 때문에 허가조건 위반으로 해서 방송법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무쪼록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의 방송구역은 제주도 일원이고, 국악방송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인데 지금 면적과 인구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가시청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극동방송 같은 경우 인구의 84% 정도가 청취가 가능한 반면 면적으로는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85%의 인구가 들을 수 있는 반면 면적은 27%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인구밀집지역은 대부분 커버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5페이지 <7>번 심사 항목을 보면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에 대해 감점을 하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관련법령은 어떤 법까지 보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재허가와 동일하게 방송법령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까지 살펴 보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 관계법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타 법령 위반 여부까지 점검한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지금 의견 주신 것은 앞으로 심사할 때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6월 30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09시 50분 폐회 】